

제 450 호

1974. 6. 21.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 백석  
편집 : 문화공보실장 김재호  
전화 75-7834  
신고 : 서울특별시 중랑발자율  
전화 75-6090

# 시보

차례

제 857 호 : 서울특별시립교향악단 설치조례충개정조례	3
제 858 호 : 서울특별시세 암정수포상금지급조례	3
◎ 고 시	
제 74 호 :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 및 지적승인	10
제 75 호 :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	10
제 76 호 : 사료성분량고시	11
제 77 호 : 사료성분등록고시	12
제 79 호 :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추가규제	12
제 80 호 : 사료성분등록고시	14
◎ 공 고	
제 110 호 : 환경계획공란공고	16
제 111 호 : 서울특별시회계 분체기준의정안설정공고	16
제 112 호 :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원료공고	17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입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 조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교향악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4년 6월 11일

## ◎ 서울특별시조례 제 857 호

서울특별시립교향악단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교향악단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조 중 「부단장 및 전임자취자」  
를 「부단장, 전임자취자 및 그의  
지휘자」로 하여 등조 중 「전임자  
취자는 상사의 명을 받아 음악에  
관한 과정을 문장하고 음악연주를  
개최한다. 다음에 「명예지휘자는  
교향악단 발행에 공로가 많은 전  
자 지휘자로 시장이 임명하고 교  
향악단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재물  
이 충당하거나 음악연주를 개최한다.  
를 포함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4년 6월 11일

## ◎ 서울특별시조례 제 858 호

서울특별시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  
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 2조 (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  
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회 원  
위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정수한 공무  
원 (법정직, 일시직, 계약공무원을  
포함한다.)

2. 비례인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함하여 부과하지 한 공부원 및 민간인	세원세인 부과를 면수한다. 다만, 예비심사는 세정부당이 행한다.
3. 정한적인 계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부원 및 민간인	제 5조(비정비치) 구. 출장소는 현지 제 1호 서식의 과년도 징수액 정수설치대장 및 별지 제 2호 서식의 숨은 세원발표부정 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 3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제 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구청장은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한 매월 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每月 7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1 건당 200원이상 2,000원 미만에 대하여는 1 건당 100원. 2,000 원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 5	②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 등장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2.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부과한자; 징수액의 100분의 5	제 7조(포상금지급) 시장은 첫조의 신청서를 접수 확인하여 每月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3. 세정향상과 세입증대를 위한 계안을 하여 세액면 계안자: 1 건당 3 만원	부 지
⑦제 1 항제 2 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4조(제안의 심사) 제 3조제 1 항 제 3호의 제안의 심사는 서울특별시 한다.	

제 450 호 시 보 1974.6.21 23-5

### 별지 제 1호 서식

### 과년도체납액 징수대장

29-6 제 450 호

# 자 보

1974.6.21

제2호서식

# 술 은 세 원 밤 글 과 징 태 장

제 450 호 시 보 1974. 6. 21. 23-7

별지 제 3 호 서식

월 분 정 수 조 상 금 결정서

수신 : 서울특별시장

참조 : 세정과장

발신 :

구청장

구 분	전 수	금 액			포상금
		세 액	가산금	계	
파년도 채납액 징수					
승 은 세 원 발 글 ( 무 단 접 용 )					
계	-				

첨부 : 파년도 채납액 징수내역 1부

승 은 세 원 발 글내역 1부

23-8 제 450 호 시 보 1974.6.21

### 별지체 3 호서식부표

세무과장

卷之三

19. *Leucosia* *leucostoma* *leucostoma* *leucostoma* *leucostoma*

卷之三

# 한국민족학회

增平文書

23-10 제 450 호

시

1974. 6. 23

고	지
---	---

## ◎ 서울특별시 고시 제 74 호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 및 지적승인

1. 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과 지적승인을 다음과 같이 하였  
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동법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123 호(73. 4. 4)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악구청 시민봉사실에  
각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6. 8

서울특별시 장

## 가. 도시계획시설 시설조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시장	시내 관악구 동작동 307-56 부근	5,672평 (18,717m <sup>2</sup> )	상가시장 (지상 1층)

도면 생략 :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악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

## ◎ 서울특별시 고시 제 75 호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

1. 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시장)  
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 도시계획  
법 제 12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와  
같이 고시제 123 호(73. 4. 4)에 의  
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성동구청 시민봉사실  
에 각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6. 8

서울특별시 장

## 가.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조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시장	시내 성동구 화양동 167-20	(1,008.3 평) 3,327 m <sup>2</sup>	시장용지 해제

도면 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76호

사로설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사로설정고시

사로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4. 6.

서울특별시장

## 다 을

1. 사로공장명 : 신촌사로 주식회사

2. 사로공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동 93번지

3. 사로공장 대표자 : 강 금로

등록 번호	사로의 명칭	사로의 용도	사로의 설정			유 효 기간
			최 소 면	최 대 면	기 간	
7-20	큰벌야외배합사로	부화후대략 13주→초상까지 (주기)	12.0	2.5	7.5	10.0~16.10.0
7-21	부로임자후기배합사로	부화후대략 4주이상(육성용제미)	15.0	2.5	6.0	10.0
7-22	고깃소후기배합사로	고깃소후기용	11.0	2.0	10.0	10.0
7-23	농축배합사로	양돈용 농축사로	16.0	2.0	4.5	13.0
7-24	농축배합사로	축우용 농축사로	16.0	2.0	4.5	13.0
7-25	젖소용배합사로	생후대략 18개월이상 (26)	13.0	2.0	13.0	12.0

22-12-24 15:00

◎ 서울특별시 고시 제 79 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 79 호  
성분 등록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 79 호  
이 일정기 사료 관리법 시행규칙 제 2

작 료 관 리 등록 고 시

등록 번호	용장명	소재지	내포 상명	사 용 도	1회 당 수 량	1회 당 수 량	1회 당 수 량	1회 당 수 량		
3-75	유경시로 공업사	제기동 998	우시로 사료 합사료	비단 농축비 사료	양돈용 등급사료	14.0	2.0	4.5	13.0	70.5
3-76	·	·	·	·	축우용 등급사료	16.0	2.0	4.5	13.0	·
3-77	·	·	·	갓소용 비단사료	상후 대약 120kg 이상 1.2kg	13.0	2.0	3.0	12.0	·
3-78	·	·	·	·	간통(영양)식물 30kg 무기 기초(영양)조리 합사료	13.0	3.0	6.0	7.0	·

◎ 서울특별시 고시 제 79 호

오염 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추가고시

1. 공해방지법 시행규칙 제 2조 제 5항

제 3의 오염 물질 허용기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하였기 이ふ

고시 한다.

가. 오염 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추가

고체비율

1974. 6. 20

서울특별시 장

## 오염 물질의 배출 허용기준 추가규제

( 제수 )

업종별 지 역 별 당(㎎/ℓ)	1일 정기 수 배출 량(㎎)	오염물질		아연 함유량 (㎎/ℓ)	동합유량 (㎎/ℓ)	카드뮴 함유량 (㎎/ℓ)	암 칼슘은 함유량 (㎎/ℓ)	수은 함유량 (㎎/ℓ)	유기인 합유량 (㎎/ℓ)	비소 함유량 (㎎/ℓ)	전답유량 (㎎/ℓ)
		정기 수 배출 량(㎎/ℓ)	비정기 수 배출 량(㎎/ℓ)								
화 가	이상 20	5 이하	3 이하	0.1이하	검출되지 않은 것	수은으로 검출되어 서 안됨	1 이하	0.5이하	1 이하		
학 나	30	*	*	*	*	*	*	*	*	*	*
공 다	50	*	*	*	*	*	*	*	*	*	*
업 라	100	*	*	*	*	*	*	*	*	*	*
제 철 가	20	*	*	*	*	*	*	*	*	*	*
제 강 나	30	*	*	*	*	*	*	*	*	*	*
제 강 다	50	*	*	*	*	*	*	*	*	*	*
암 연 업 라	100	*	*	*	*	*	*	*	*	*	*
금 속 금속제품 나	20	*	*	*	*	*	*	*	*	*	*
모는 기 나	30	*	*	*	*	*	*	*	*	*	*
제 기 구 제조업 라	50	*	*	*	*	*	*	*	*	*	*
	100	*	*	*	*	*	*	*	*	*	*

( 대기 )

구 분	오염 물질	아연화합물 (Zn 로서)	동화합물 (Cu 로서)	카드뮴화합물 (Cd 로서)	연화합물 (Ni 로서)
피해자 접히 용농도 (㎎/㎥)		0.1	0.1	0.0005	0.01
배출 허용농도 (㎎/㎥)				1.0	30

23-14 계 450 호

시

1974. 6. 21.

◎ 서울특별시 고시 제 80 호  
사료 성분 등록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료 성분 등록을 행하였기 고지한다.

1974. 6. 20.

사료 관리법 제 9 조 및 동법 제 8 조

서 울 특 별 시 장

## 다 용

- 사료 공장명: 동립산업진흥주식회사 사료공장
- 사료공장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동 636
- 대표자 주소: " " "
- 대표자 성명: 김재식
- 사료성분등록 내용

등록 번호	사료 종류	사료명칭	사료용도	사료의 성분량			유효 기간
				최소한 량	최대한 량	조작방법	
10-151	비탄 사료	어린명아리비탄사료	부화후내약 6주까지	5% 이 상 19.0	6% 이 하 2.5	6.0-9.0	74.6.20 76.6.19 까지
10-152	"	"	" 7-12주까지	16.0	2.5	7.0	10.0
10-153	"	"	" 13주~초산까지(전기)	12.0	2.5	7.5	10.0
10-154	"	"	" (후기)	12.0	2.5	7.5	10.0
10-155	"	산란초기용	초산후부터 대략 20주까지	15.0	2.0	7.0	13.0
10-156	"	증가용	" 대략 21주~35주까지	14.5	2.0	7.0	13.0
10-157	"	밀기용	" 36주이상	14.0	2.0	8.0	13.0
10-158	"	초기용	초산후부터 대략 20주까지(신약 증제)	15.0	2.0	7.0	13.0
10-159	"	초기용	" (부로일리증제)	15.0	2.0	7.0	13.0
10-160	"	부로인리전기	부화후대략 4주까지	19.0	2.5	6.0	9.0
10-161	"	후기	" 4주이상(제미완성용)	16.0	2.5	6.0	10.0
10-162	"	후기	" (제미육성용)	16.0	2.5	6.0	10.0
10-163	"	"	" (하이육성용)	16.0	2.5	6.0	10.0

등록 번호	사료 종류	사료명칭	사료용도	사료의 성분량				유효 기간	
				최소한		최대한			
				조단 백질	지방	조 설포 류	조 화물		
10-164	비합 사료	부로일러후기비합사료	부학후대략 4주이상(하이원성용)	이상 %	이상 %	이하 %	이하 %	74.6.20 75.6.19 까지	
10-165	•	젖매기종아지	• 생후대략 3개월까지	19.0	2.5	8.0	9.0	•	
10-166	•	젖소승	• 3~6개월까지	16.0	2.5	10.0	9.0	•	
10-167	•	젖소른	• 6~18개월까지	12.0	2.0	12.0	11.0	•	
10-168	•	젖소용	• 18개월이상(1호)	13.0	2.0	13.0	12.0	•	
10-169	•	•	• • (2호)	13.0	2.0	13.0	12.0	•	
10-170	•	고깃고전기	• 고깃소전기비합사료	15.0	2.0	13.0	12.0	•	
10-171	•	• 중기	• 중기	13.0	2.0	11.5	11.0	•	
10-172	•	• 후기	• 후기	11.0	2.0	10.0	10.0	•	
10-173	•	젖매기돼지	• 생후대략 2개월까지	18.0	2.0	6.0	9.0	•	
10-174	•	어린돼지	• 생후대략 2~4개월까지	15.0	2.0	7.0	9.0	•	
10-175	•	중	• 생후대략 4개월 이상비우 른 및 8개월까지 씨돼지	12.0	2.0	8.0	10.0	•	
10-176	•	씨	• 생후대략 9개월이상이되는씨돼지	12.0	2.0	11.0	11.0	•	
10-177	•	농축	• 농축비합사료(양액용농축사료)	16.0	2.0	4.5	13.0	•	
10-178	•	•	• (양분용농축사료)	16.0	2.0	4.5	13.0	•	
10-179	•	•	• (증분용농축사료)	16.0	2.0	4.5	13.0	•	

23-16 제 450 호 시

보 1974. 6. 21.

공 고

⑤ 서울특별시 공고제 110호

환지제회 공탁 공고

1.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창동토지 구획정리사업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3조, 제46조 제47조 및 서울특별시 창동토지 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도서와 같이 농지 구 일부토지에 대한 환지제회를 정하고 공고일로부터 14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탁에 풍한다.

2. 환지제회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1과에 비치하고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통지할 것이나 송달되지 않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공고로 통지에 잠을 한다.

공 타 캐 요

- 사업명: 창동토지구획정리사업
- 사업집행지: 도봉구상물동일부

3. 시행면적: 20,059.60평 (44필지)

1974. 6. 10.

서울특별시장

⑥ 서울특별시 공고제 111호

서울특별시회계판례  
기판의 공인신조증고

서울특별시 낙성대수입금 세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원과 분입 수입금 출납원공안을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조하였기 동조례제9조에 의하여 이에 공고함.

1974. 6. 10.

서울특별시장

가. 사용일자

74. 6. 10.

나. 공인의 인명



## ○ 서울특별시 공고제 112 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제 141호(72.10.16)로 시설 결정하여 등 고시 제 23호(73.2.9)로 실사 계획인가한 서울특별시 철거민이 주정착단지 조성을 위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46조제 2항 및 제 3항과 동법 제 85조제 1항 및 건설부고시제 123호(74.4.4)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 관제도서를 서울특별시주택국개발 1과 및 운명출장소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에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6. 11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집행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사동 산 93번지 (임) 의 1필지

나. 사업명 :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철거민 이주정착단지 조성)

다. 사업준공면적 :

23,562평(인가면적 23,500평)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각

마. 사업기간 : 73.2.15-74.6.15

바. 준공년월일 :

74.5.25

사. 준공도면 :

변침(도면생략)

## ○ 서울특별시 공고제 114 호

성동구에 무 1회분임수입금  
출납원 공인 계좌 공고

성동구 구청 분임수입금 출납원인을  
공인조례 제 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작하였기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함.

1974. 6. 5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자 사용일자 : 1974. 6. 5

2. 적인의 인명 :

분임수입금 출납원인



23-18 제 450 호

지 보

1974. 6. 21.

## ○ 서울특별시 공고제 115 호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  
사업 실시 계획 공람 공고

## 1. 건설부고시제 470 호 (73.12.1.)

로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구역중 명륜구역 및 한남제 1구역에 대한  
신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  
일로부터 14일간 일 반인의 공람에  
공한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주택국개량

2과에 비치하여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는 별도로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통지에  
간용한다.

1974. 6. 17.

서 울 특 별 시 장

## 공 람 개 요

## 가. 사업명:

명륜구역 및 한남제 1구역재개발사업

## 나. 사업시행면적:

139,000 m<sup>2</sup> (981필지)

## 다. 시행자: 서울특별시장

번호	구 역 · 명	위 치	면적	기 비 고
5 (1-7)	명륜구역 일대	명륜 3 가산 3 의 15번지 일대	100,000 m <sup>2</sup>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139 (8-5)	한남제 1구역	한남동 726번지 일대	39,000 m <sup>2</sup>	"

## ○ 서울특별시 공고제 117 호

서울특별시소방본부사법경찰관인공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특별시소방본부 사법경찰관인을 신  
조하였기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9조  
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74. 6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인사용일시: 74.6.20. 09:00

2. 공인의 인영

서울특별시소방본부 사법경찰관인	서울특별시소방본부 사법경찰관인
	

##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18 호

## 환자처분법 경 공고

1. 구획정리사업법 제 61조에 의거  
67.1.18자 환자처분법 서교토지구  
획정리사업지구 76구획내 서교동  
358-10호의 재산을 토지소유자합  
의에 따라 현황측량하여 실사용  
면적을 환자면적으로 정하고 각필  
지의 권리면적은 지역내 공통감보  
율을 적용하며 신생도로는 사용자  
등분부담으로 산출하여 분할표자  
이를 공고한다.
2. 동지역면경내용 및 도면은 당시  
도지계획국구획정리 1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이게 한다.
3. 서류송달은 토지소유자에게 송달될  
것이나 송달을 받지 못하는 소유자는  
이 공고로 통지에 갈을한다.

1974. 6. 20

서울특별시장

예 규

## ○ 서울시예규 제 272 호

비상소집설시규정증증개정규정

비상소집설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제 2호중 「1군」에 「남부」  
와 「3군」에 「태평」을 각자  
신설하고 「3군」중 「중부」를  
「4군」에 삽입한다.

제 7조증제 4호를 제 6호로 하고 동  
조에 제 4호 및 제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파출소장은 판내에 거주하는 전  
경찰관에 대하여 한장전달과 전  
화전달 방법으로 구분하여 신속  
히 전달하여야 한다.

5. 전화전달시에는 본인 또는 그  
가족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그  
결과를 별지제 4호서식의 2 전화  
전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한장 전달시에는 소집전달  
표를 피전달자에 수교하여야 한  
다.

제 15조제 2호 「나항에」 전화전달부  
를 삽입한다.

별지증 별지제 4호의 서식의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제 7호  
서식 및 별지제 8호서식을 각자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1974. 6. 20부터 시행한다.

23-20 제 450 호

1974. 6. 21

별지 제 6 호 서식 외 2

## 전화 전달부

소속	제금	성명	피전달자전화번호	전달시간	전화수령자	전달자

별지 제 7 호 서식

## 거주군내서간 응소자수 총

군별 구분	출발시	경유지	도착지
1 군	남 대 문 영 등 포 영 등 부	용 산 - 노 랑 진 노 향 친 노 랑 랑 노	영 등 대 남 남 영 포 문 부 포
2 군	중 서 마 서 부 포	서 서 대 문 서 대 대 문 서 대 대 문 서	마 중 서 포 부
3 군	성 동 부 동 부 능	청 청 랑 리 청 랑 랑 청	동 태 성
4 군	중 북 부 북 부	동 대 문 - 성 대 성 북 - 동 대 부	부 중 부 부

별지 제 8 호 서식

## 노선별 수송 코스 및 경계지

1코스 : 남부-노량진-용산-본국-동대문-청량리-태릉

2코스 : 영등포-마포-서대문-본국-성북-북부

3코스 : 서부-종로-남대문-본국-중부-성동-동부

4코스 : 동부-성동-중부-본국-종로-서부

5코스 : 태릉-청량리-동대문-본국-용산-노량진-남부

6코스 : 북부-성북-본국-서대문-마포-영등포

사 명	충무과 근무를 명함.
● 1974. 6. 8 구회정리 1과 주 사보 원유철 원에 위하여 그적을 명함.	● 1974. 6. 12 경기도 지방약무 청남지보건소 기원 이상현 서울특별시 전임을 명함. 지방약무기원에 입함.
● 1974. 6. 10 영동포구 지적기사 강동식 관악구 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적기사 안홍기 동대문구파전 (74.10.5까지) 근무를 명함.	영동포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종로구(자위 해재증) 서기 서 출 복직을 명함. 마포구 근무를 명함.
중구 지적기사보 성광수 영동출장소 파전 (74.3.5까지) 근무를 명함. 관악구 지방지적 세정과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지적 영동포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지적 충구 근무를 명함. 지방비서관 (3급율류상당)에 임임. 1호봉을 급함.	● 1974. 6. 13 도시계획과 지방토목 (재개발제작) 기과 전시국가지도회의본부 파전근무를 박영환 명함. (74.6.12-6.28까지) 성동구 서기보 조명수 안중무 지방행정서기에 추서함. 장윤수 ● 1974. 6. 15 영동포구 지방행정 도립1동 주사보 박찬우 박준완 충무처 견출을 명함.

23-22 제 450 호

시  
부

1974. 6. 23.

◎ 1974. 6. 17

서립운동장 지방전기 기자사 김영웅  
공업파파전 근무를 명함.

기전과 기자사 송봉환  
공업파파전 근무를 명함.

기전과 기자보 노화석  
공업파파전 근무를 명함.

충무과 기체기사 장무봉  
공업파파전 근무를 명함.

수도광리사업소 기체기사 정나천  
공업파파전 근무를 명함.

로목시험소 지방화공 기사 홍정선  
공업파파전 근무를 명함.

도시가스사업소 시가스 기사 조성학  
공업파파전 근무를 명함.

환경과 기자보 강중구  
공업파파전 근무를 명함.

도시가스사업소 시가스 이원홍  
공업파파전 근무를 명함.

주택건설과 기획보 박창식  
복직을 명함.

2호봉을 금함.  
주택건설과 근무를 명함.

중구보건소 지방간호기사 박수현  
복직을 명함.

원에 위하여 그직을 면함.

◎ 1974. 6. 20

제한상  
지방의무기경지보에 입함.

1호봉을 금함.

용산구 보건소장에 보함.

충구서기 조병수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행정보 장경순  
영동출장소 근무를 명함.

진하철본부(전지방전기화파장지무대리) 기자  
배천근  
지방전기기정에 입함.

2호봉을 금함.

지하철본부 전차과장에 보함.

내무국총무과 지방교환원 맹희숙  
용산구 근무를 명함.

용산구 지방교환원 오한숙  
내무국총무과 근무를 명함.

내무국총무과 지방교환원 최화자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교환원 김복순  
내무국총무과 근무를 명함.

제 450 호 서 보 1974.6.21. 23-23

영등포구 수도사업소	지방행정 서기	유명식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
도시가스사업소 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마포구 수도사업소 지방행정 서기보시보
영등포구 수도사업소	지방행정 서기보	정영록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
도시가스사업소 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성북구 수도사업소 지방행정 서기보시보
서대문구 수도사업소	지방행정 서기보	김원재	이태식
도시가스사업소 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수도사업소	지방행정 서기보시보	이소광	서대문구 수도사업소 지방행정 서기 안전수
		성북구	근무를 명함.

서 울 특 별 시 장